

# 「평창군 창의·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이창열 의원
- 제안일자 : 2024. 5. 3.
- 회부일자 : 2024. 5. 17.
- 상정일자 : 2024. 5. 17.

### 2. 제안이유

-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인 ‘인성이 뒷받침된 창의적 인재’ 양성 교육을 실현하고자 우리 군 학생의 창의·인성교육 진흥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조례안의 기본원칙 규정(안 제4조)
- 창의·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명시 및 예산 지원(안 제5조)
- 지원 사업의 위탁(안 제6조)
-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연계망 구축(안 제7조)
- 교육 프로그램 구성 등에 대한 홍보(안 제8조)

## 4. 검토의견

### 가. 관련 근거

- 「인성교육진흥법」에서는 지자체가 인성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또한, 「진로교육법」 제5조 및 제18조에서 지자체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진로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### 나. 입법의 취지

- 평창군의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도덕적 판단을 하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5조(사업의 범위 등)에서 우리 군의 창의·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하고,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.

- 안 제7조(연계망 구축) 및 제8조(홍보)에서는 교육환경을 위한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고 창의·인성프로그램에 대해 적극 홍보하도록 함.

## 5. 종합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창의·인성교육<sup>1)</sup> 진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, 수권범위 안에서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없이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.

---

1) 창의·인성교육이란 21세기 글로벌 인재 양성에 필요한 창의성과 인성을 길러주기 위하여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의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두 교육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창의성의 배양과 발휘를 촉진하는 인성과 사회문화적 가치와 출도를 조성하고,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구비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철학 및 교육전략을 의미한다. (「창의·인성 교육 기본방안」, 교육과학기술부, 2010).

□ **인성교육진흥법**

**제4조(국가 등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,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인성교육 지원 등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,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(이하 “인성교육프로그램”이라 한다)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**제15조(인성교육 예산 지원)*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지원,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·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.

**제19조(언론의 인성교육 지원)*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들의 참여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

필요한 경우 언론(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방송, 신문, 잡지 등 정기간행물,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등을 포함한다)을 이용하여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 □ 진로교육법

**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, 북한이탈주민,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진로체험 지원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·기관·단체 등(이하 “진로체험기관”이라 한다)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.

**제20조(협력 체계 구축 등)**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·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